

범죄 피해자(이하 “피해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기대할 수 있는 대우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 헌장에 명시되어 있다.

웹사이트(victimsinfo.govt.nz)에 들어가면 헌장 전문을 볼 수 있고, 0800 650 654 또는 이메일(victimscentre@justice.govt.nz)로 요청하면 헌장 인쇄본을 구할 수 있다.

도움을 받는 방법

웹사이트(victimsinfo.govt.nz) -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형사 사법 제도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구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정부 기관 및 기타 기관 목록을 볼 수 있다.

무료 전화(0800 650 654) - 이 전화로 문의하면 피해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찾는데 도움을 받거나 관련 정보를 구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통역사를 주선해 줄 수 있다.

법원 피해자 자문관 -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법원 피해자 자문관이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법원 절차 이해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0800 650 654로 전화하면 법원 피해자 자문관과 통화할 수 있다.

원칙

피해자, 가족 및 친척을 돕는 개인, 조직 및 정부 기관은 모두 다음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 피해자의 안전 및 피해 감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 예의를 표하고 동정심을 가지고 피해자의 문화, 종교, 민족, 사회적 요구와 가치 및 신념을 존중해야 한다.
- 존엄성을 바탕으로 대우하고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존중해야 한다.
- 공정한 대우를 하고 적시에 피해자의 필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이용 가능한 도움들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에 대해 정직, 정확하게 답변해 피해자가 내용을 알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문화적으로 적절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피해자를 돕는 개인과 기관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
-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피해자와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해야 한다.
- 피해자가 의견을 말하고 민원을 제기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의 권리

경찰에 범죄를 신고했거나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피해자는 피해자권리법(2002) 및 관련 법률에 규정된 다른 권리도 가진다. 경찰, 법원, 교정 공무원 등 사법 관련 기관 및 직원은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

피해자는 본인의 상황에 적절한 프로그램, 해결 방안, 서비스에 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수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 합리적인 시간 내에 사건 처리 과정에 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다음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다.

- 피고(청소년 포함)에게 적용하는 혐의
-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
- 증인으로서 피해자의 역할
- 법원 심리가 있을 시기와 장소
- 형사 심리의 결과
- 가족 그룹 회의에서 합의된 청소년에게 내려진 처벌의 진행 정도.

피해자는 본인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제 3자를 지정해 그가 이러한 정보를 대신 받도록 할 수 있다.

범죄가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작성해 신고에 참조되도록 할 권리가 있다. 이 진술서 작성을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판사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한 제 3자가 이 진술서를 법정에서 낭독하게 할 수 있다.

피해자는 판사가 범죄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이 범죄자일 경우에는 이름 및 일부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마오리어나 뉴질랜드 수화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증인이 아닌 경우에도 판사가 동의하면 이러한 언어를 사용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에서 통역사를 주선해 준다.

증거 자료로 제출한 피해자의 개인 용품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되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

중범죄

성폭행, 강력 폭행 등 중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는 더 많은 권리를 가진다.

범죄자의 보석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설명해 줄 것이다. 범죄자가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그리고 피해자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보석 조건이 있을 경우 그에 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피해자는 인적사항을 경찰서에 등록해 범죄자에게 가석방 청문회, 복역 중 재범행, 출옥, 탈옥, 사망과 같은 중요한 일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제 3자를 지정해 그가 대신 이러한 정보를 받도록 할 권리가 있다.

범죄자의 가석방 고려 또는 감시 연장 명령 변경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 이는 2년 이상 복역 중인 범죄자의 경우에 적용된다.

어린이 또는 청소년

범죄자가 어린이(10-13세)이거나 청소년(14-16세)인 경우:

- 피해자는 가족 그룹 회의에 참석하여 범죄가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범죄자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 지에 관해 말할 권리가 있다.
- 지원자와 함께 가족 그룹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전화 회의 참석, 서면 의견 제출, 또는 타인에게 부탁하여 본인을 대변하게 할 수도 있다.

민원 제출

기관에 대한 민원

피해자는 권리가 충족되지 못했다고 생각될 경우 민원을 제출할 수 있다:

- 해당 기관에 말하고 그 기관의 민원 처리 절차를 따른다.
- 피해자 정보라인(0800 650 654)에 전화하거나 victimsinfo.govt.nz을 참조한다.

관련 기관은 신속, 공정하게 민원에 응답해야 한다. 다음 기관에 민원을 제출할 수도 있다:

- 민원 조사관 사무실(Office of the Ombudsman)
0800 802 602
ombudsman.parliament.nz
- 독립 경찰 행위 조사청
(Independent Police Conduct Authority)
0800 503 728
ipca.govt.nz
- 개인정보 보호 위원장(Privacy Commissioner)
0800 803 909
privacy.org.nz

판사에 대한 민원

법원, 판사, 뉴질랜드 가석방위원회는 피해자 헌장에 명시된 권리, 원칙을 존중하지만 그에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

판사의 행동에 대한 민원은 사법 행위 위원장(Judicial Conduct Commissioner)에게 제출할 수 있다(0800 800 323, 또는 www.jcc.govt.nz).

뉴질랜드 가석방위원회에 대한 민원은 0800 727 653, 또는 info@paroleboard.govt.nz으로 제출할 수 있다.